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현안해결’ 두 팔 걷은 중기업계

민주당 이어 한국당과 간담회 가져
협동조합 활성화 등 과제 56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규제 완화, 현장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 56건을 제1야당에게 전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에도 이 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45건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오는 17일 예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선 황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김규환 의원, 임이자 의원, 이현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에는 기분 좋게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무겁고, 유쾌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연 뒤 “문재인 정부 정책실행 2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생산, 투자 등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내수부진에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하니 정말 힘들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우리 당은 반시장 반기업정책을 반드시 막고, 경제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백종운 대한기계설비협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전달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조합사무를 중기부로 일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업 등 공동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효과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규제자유특구 쟁점 ‘의료정보’ 포럼 개최

중기벤처부, 원격의료 등 토론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의료정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 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할 규제가 있다.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 실장은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로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공유주방 규제 풀어줘 큰 도움 박용만, 식약처에 감사한 까닭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독립주방’ 사업에 어려움 커
골목식당의 실험실 역할 기대
“공유주방 창업 5년 생존율 90%”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규제완화 감사를 전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15일 목동 식약청을 찾았다고 밝혔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기웅 대표와 그레이트 양승만 대표 등 청년 외식스타트업 경영자들과 함께했다.

박 회장은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주방 공유 관련 규제 완화에 감사를 표했다. 종전까지는 1개 음식점자에 별도 독립된 주방을 요구해 공유주방 사업에 어려움이 컸다.

박 회장은 식약처 이의경 처장과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김현정 식품안전정책과장 등에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치킨집으로 일컬어지는 초영세 스타트업에 큰 인기인데 샌드박스를



박용만(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오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해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활용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셨다”며 “하루마다 430여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개는 폐업 하는게 외식업계의 현실”이라며 “4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스타트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약처가 미래 사업을 여는 ‘엔젤’이 되어주길 바

란다고 규제 해소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위국 김기웅 대표는 “공유주방을 거쳐 창업한 경우 5년 생존율이 90%인 반면 거치지 않은 경우는 10%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식품, 외식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돼 식품, 외식업계의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中企,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가능해진다

중기부, 상생협력법 등 오늘 시행
위탁기업 범위 중기업까지 확대

공급 원가가 올랐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탁기업 범위도 중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의 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통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이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공급 원가에 일정 기준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됐거나 재료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협동조합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경 등)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유	시행령 개정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행위별 500만원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시행규칙 개정
벌점 부과	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 부과 유형기준 정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노무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 범위도 확대됐다. 위탁기업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대폭 넓혔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협의를 신청하는 개별 기업의 부담도 줄었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 요건은 위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또는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정보, 영업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신청서 양식과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도 활성화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개정 상생협력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